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 [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]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 · 조문 원문

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이하 “한국산업표준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., 2022. 10. 18.>

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
2.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

그림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에는 법령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조문 대조 2026. 10. 28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 [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]

낙하물 방지망 · 방호선반 설치 기준

설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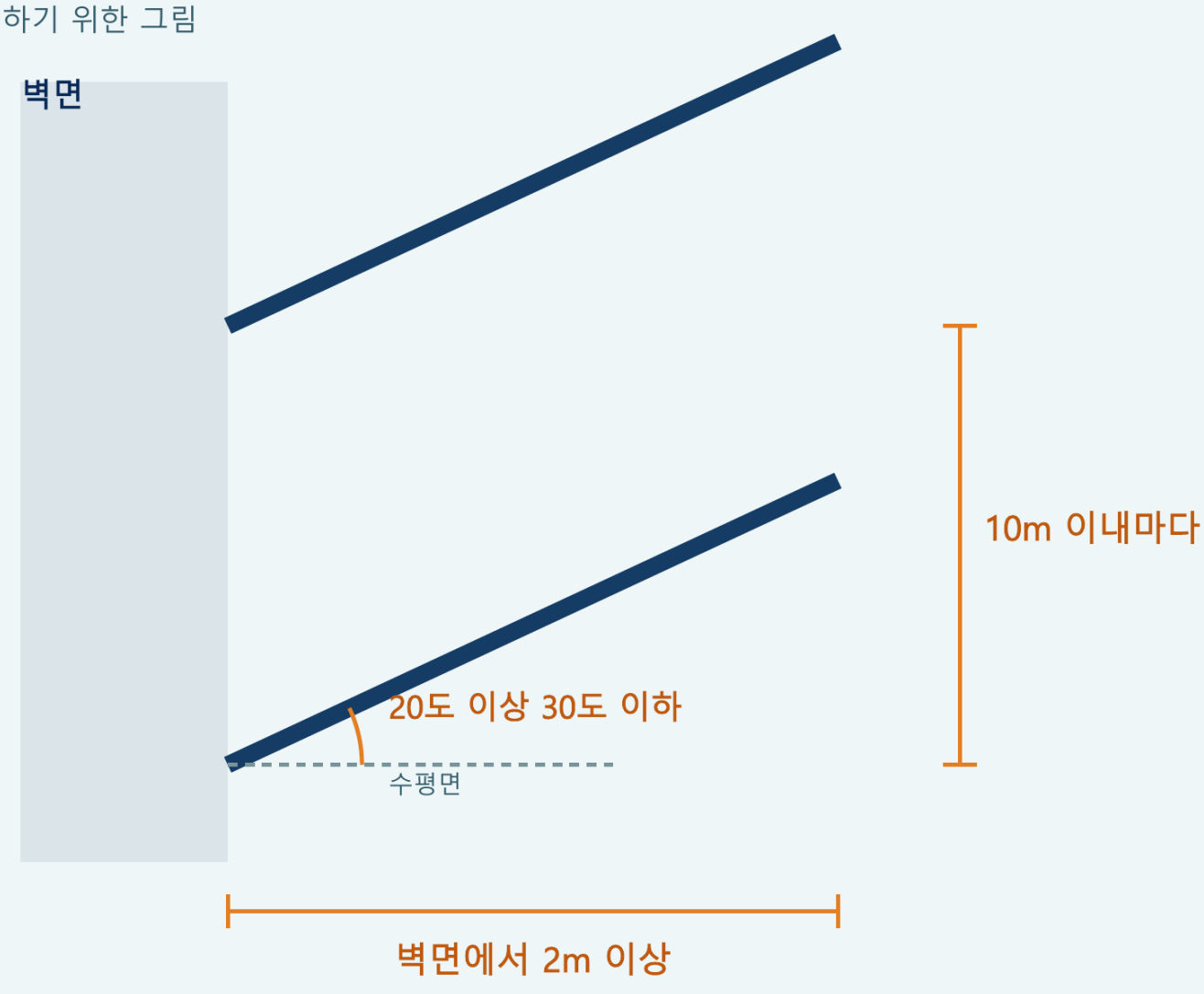

10m: 높이 방향 설치 간격 · 2m: 벽면에서 내민 길이

각도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20도 이상 30도 이하

수직보호망은 해당 설비의 성능과 설치 기준을 확인해요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 · 조문 원문

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,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이하 "한국산업표준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28., 2022. 10. 18.>
③ 제2항에 따라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,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할 것
2.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

그림은 이해를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에는 법령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세요.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7.